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7.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 8. 27.)

상정, 축조심사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 11.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9차 정무위원회 (2024.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선교의원)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현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¹⁾

○ 그 결과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소를 달리하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1) 「국가유공자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자법」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유공자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호)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 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한편, 보훈관계법령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과 생계지원금(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을 정하고 있는데, 생계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수급권 확인·심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경우, 생계지원금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폐지되는 효과가 있음.²⁾³⁾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⁴⁾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 강화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⁵⁾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제4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4항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고시 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8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게 됨.

4)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부터 동 기준을 폐지하였음.

5)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검토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의안번호 제2023-875호).

□ 또한, 개정안은 ‘가구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생활수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⁶⁾

○ 다만,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문언만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가구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추가되는 대상 인원은 14,536명이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약 39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인 경우는 2023년에,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2024년에, 각각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예산 소요는 약 2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경우 법 제14조제2항을 개정하면서 “부양의무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제54조의2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조사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의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